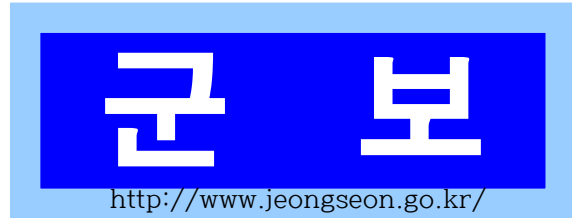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50호 2015. 3. 4.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5-15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 정선군 고시 제2015-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5-143호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6
- 정선군 공고 제2015-148호 2015년도 정선군 제안모집 공고 7
- 정선군 공고 제2015-149호 2015년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8
- 정선군 공고 제2015-162호 정선군 예산분야 지방재정공시 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고	시
---	---

정선군고시 제2015-15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7일

정 선 군 수

- 가. 결정취지 : 정선읍 북설리 강원레미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A-4 획지내 기존 레미콘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공작물 변경(배치플랜트)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고자 함.
-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813번지 일원
- 다. 면 적 : 31,800㎡(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 : 강원레미콘(주) 대표이사 문 대 수
- 마.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 바.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합 계	31,800	-	31,800	
관 리 지 역	31,800	-	31,800	
계획관리지역	31,800	-	31,8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1	강원레미콘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일원	31,800	-	31,800	2012.11.23 (강원도고시 2012-358호)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 변경없음

구 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1	100	1,127	1	100	1,127	-	-	-	-	-	-
중 로	-	-	-	-	-	-	-	-	-	-	-	-
소 로	1	100	1,127	1	100	1,127	-	-	-	-	-	-

(2)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합 계		1				100						
소로 합계		1				10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	북실리 산125-2	북실리 808-12	일반 도로	-	2012.11.23 (강원도고시 2012-358호)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가 구 번 호	기정면적 (㎡)	가 구		증 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계	-	-	31,800	-	
A	공 업 용 지	-	북실리 810번지 일원	21,395	-	
B	공공시설용지	-	북실리 811번지 일원	5,608	-	
C	녹 지 용 지	-	북실리 817-2번지 일원	4,797	-	

2)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 면 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기정면적 (㎡)	가 구		증 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		
	계		-		31,800	-	
A	공 업 용 지		-		21,395	-	
	A-1	자갈야적장(레미콘)	-	북실리 828-5번지 일원	3,392	-	
	A-2	레미콘생산시설1	-	북실리 808-12번지 일원	1,524	-	
	A-3	아스콘생산시설	-	북실리 808-5번지 일원	3,490	-	
	A-4	레미콘생산시설2	-	북실리 810번지 일원	4,430	-	
	A-5	보강토벽돌	-	북실리 808-8번지 일원	3,409	-	
	A-6	골재야적장	-	북실리 산126-1번지 일원	3,910	-	
	A-7	사무실	-	북실리 807-1번지 일원	1,240	-	
B	공 공 시 설 용 지		-		5,608	-	
	B-1	도 로	-	북실리 811번지 일원	4,237	-	
	B-2	주차장	-	북실리 805-1번지 일원	1,371	-	
C	녹지용지		-		4,797	-	
	C-1	경관녹지	-	북실리 817-2번지 일원	3,028	-	
	C-2	완충녹지	-	북실리 811번지 일원	180	-	
	C-3	완충녹지	-	북실리 산126-1번지 일원	912	-	
	C-4	완충녹지	-	북실리 828번지 일원	677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A-1	북실리 804번지 일원	용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자갈야적장[레미콘])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기정	A-2	북실리 808-12번지 일원	용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레미콘생산시설1)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기정	A-3	북실리 808-5번지 일원	용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아스콘생산시설)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기정	A-4	북실리 810번지 일원	용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레미콘생산시설2)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변경	A-4	북실리 810번지 일원	용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레미콘생산시설2)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 공작물높이 25m이하	
			배 치	도면참조 (레미콘공장2 변경)	
			형 태	조립식 구조	
기정	A-5	북실리 808-8번지 일원	용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보강토벽돌)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기정	A-7	북실리 807-1번지 일원	용 도	비금속제품제조시설및부대시설 (사무실)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조립식 구조	

정선군 고시 제2015-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2.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2건

연번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49-1	정선군 정선읍 비룡동길 397-6	2015.03.02	비룡동이라는 지명인용
2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083-2	정선군 화암면 거북바위길 28	2015.03.02	거북바위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560-21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5-143호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5일

정 선 군 수

1. 개발기본계획 개요

가. 위 치 : 정선군 행정구역 전역(약 1,220.67km²)

나. 계획내용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

2. 공개개요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별도첨부)

나. 공개방법 :

- 정선군 홈페이지(www.jeongseon.go.kr) 고시·공고에 공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공개

다. 공개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의견제출 방법 : 정선군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전화 033-560-2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5-148호

2015년도 정선군 제안모집 공고

우리군에서는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기 위해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여 주신 우수한 의견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2월 25일

정 선 군 수

1. 관련규정

○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

2. 공모기간 : 공고일 현재 ~ 2015.11.30.

3. 제안자격 : 전 국민(외국인 포함)

4. 제안형태(범위 및 내용)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 선정

- (1) 군민의 생활편익을 꾀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방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 ▶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5. 응모방법

가. 구비서류

- (1) 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1부 제출
-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나. 제안서 작성요령

- (1) 제안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2) 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추진계획), 기대효과

※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는 제안심사 제외

다. 접 수

- (1)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국민제안
 - 군홈페이지 내 군민제안(국민신문고 연동)

(2) E-mail : kje10@korea.kr

(3) Fax : (033)560-2592

(4) 우 편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앞)

6. 제안심사

가. 심사안건 : 2015. 11. 30일까지 접수분

※ 접수기간 이후에 제안은 익년도 심사

나. 심사횟수 : 반기별 심사(1년 2회)

다.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라. 심사방법

- (1) 1차(실무부서의 의견수렴) : 제안추천
- (2) 2차(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채택여부 결정
 - ※ 각 항목별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 제안 ⇨ 미채택
 - ※ <동상>이상 가치 제안 ⇨ 3차심의 상정
- (3) 3차(제안심사위원회 심의) : 등급결정 (금·은·동상)

7. 시상 및 특전

가. 시상시기 : 2015년 연말

나. 창안등급 및 부상금 기준

- (1) 금 상 : 1창안당 1,000만원
- (2) 은 상 : 1창안당 700만원
- (3) 동 상 : 1창안당 400만원
- (4) 장려상 : 1창안당 100만원
- (5) 노력상 : 1창안당 20만원

※ 금·은·동상 : 제안심사위원회 채점표 근거
장려·노력상 : 정선군정조정위원회 채점표 근거

8. 권리 승계사항

가. 응모된 제안은 일체 미반환

나. 채택된 창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

정선군 공고 제2015-149호

2015년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안모집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정 선 군 수

1. 관련규정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2. 제안기간 : 공고일 현재 ~ 2015. 11. 30.

3. 제안자격 : 정선군 산하 전 공무원
(단독 또는 공동 제출)

4. 제안형태

가. 자유제안(아이디어제안)

- (1) 군민의 생활편익을 꾀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방안 등

나.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실과소장·읍면장이 추천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 ▶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5. 응모방법

가. 구비서류

- (1) 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1부 제출
-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자료

나. 제안서 작성요령

- (1) 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추진계획), 기대효과

※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는 제안심사 제외

다. 접 수

- (1)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공무원제안
- (2) E-mail : kje10@korea.kr
- (3) Fax : (033)560-2592
- (4) 우 편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앞)

6. 제안심사

가. 심사안건 : 2015. 11. 30일까지 접수분

※ 접수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

나. 심사횟수 : 반기별 심사(1년 2회)

다.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완성도

라. 심사방법

- (1) 1차(실무부서의 의견수렴) : 제안추천
- (2) 2차(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 각 항목별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 제안 ⇨ 미채택

7. 시상 및 인사특전

가. 시상시기 : 2015년 연말

나. 부상금 및 인사특전

- (1) 특별상 : 1창안당 200만원~300만원

※ 특별승급

- (2) 우수상 : 1창안당 100만원~200만원

- (3) 장려상 : 1창안당 50만원~100만원

- (4) 노력상 : 1창안당 10만원~20만원

※ 공동제안시 각자의 기여도(백분율)에 따라 지급

8. 권리 승계사항

가. 채택된 창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

정선군 공고 제2015-162호

2015년 정선군 예산분야 지방재정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동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방법)에 의거 「2015년도 정선군 지방재정공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정 선 군 수

2015년 정선군 재정공시(예산)

- ◆ 우리 군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679억원으로, 전년 예산액 3,248억원 대비 4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554억원) 보다 12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8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71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51억원입니다.
- ◆ 우리 군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4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66%입니다.
- ◆ 우리 군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8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살림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동종단체보다 높고 통합재정수지 역시 3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운영이 상당히 건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대성(033-560-2220)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3,679	3,248	430	3,554	3,418	136
	세 출 예 산	3,679	3,248	430	3,554	3,418	136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23.47	18.89	4.58	11.64	11.41	0.23
	재 정 자 주 도	61.66	60.1	1.56	57.48	58.38	△0.90
	통 합 재 정 수 지	38	28	10	30	30	0
③ 재정운용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정선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862	290,402	8,885	27,559	41,0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15,515	317,077	324,025	324,837	367,8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5,527	100.0%	248,699	100.0%	259,633	100.0%	260,667	100.0%	290,402	100.0%
지 방 세	28,636	11.7%	29,403	11.8%	27,997	10.8%	29,202	11.2%	30,001	10.3%
세외수입	25,540	10.4%	26,419	10.6%	31,421	12.1%	20,050	7.7%	38,157	13.1%
지방교부세	104,935	42.7%	104,800	42.1%	103,300	39.8%	104,300	40.0%	107,800	37.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900	1.2%	2,900	1.2%	2,900	1.1%	3,100	1.2%	3,100	1.1%
보 조 금	83,516	34.0%	85,177	34.3%	94,015	36.2%	95,945	36.8%	96,204	33.1%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0	0.0%	8,070	3.1%	15,140	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정선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862	290,402	8,885	27,559	41,0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15,515	317,077	324,025	324,837	367,8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5,527	100%	248,699	100%	259,633	100%	260,667	100%	290,402	100%
일반공공행정	18,016	7.3%	24,845	10.0%	24,765	9.5%	22,219	8.5%	20,519	7.1%
공공질서 및 안전	13,119	5.3%	8,100	3.3%	14,115	5.4%	13,490	5.2%	14,787	5.1%
교 육	4,914	2.0%	4,575	1.8%	4,593	1.8%	4,253	1.6%	5,029	1.7%
문화 및 관광	21,499	8.8%	14,001	5.6%	17,682	6.8%	13,681	5.3%	21,685	7.5%
환경보호	14,359	5.9%	12,792	5.1%	15,948	6.1%	12,010	4.6%	20,750	7.2%
사회복지	36,285	14.8%	34,607	13.9%	36,895	14.2%	41,641	16.0%	48,729	16.8%
보 건	4,372	1.8%	4,477	1.8%	4,180	1.6%	12,141	4.7%	6,075	2.1%
농림해양수산	37,425	15.2%	37,939	15.3%	39,293	15.1%	39,569	15.2%	40,236	13.9%
산업·중소기업	1,168	0.5%	2,418	1.0%	1,335	0.5%	1,332	0.5%	2,883	1.0%
수송 및 교통	6,874	2.8%	8,431	3.4%	8,428	3.3%	7,853	3.0%	7,767	2.7%
국토 및 지역개발	48,999	20.0%	55,941	22.5%	47,523	18.3%	44,643	17.1%	52,352	18.0%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2,542	1.0%	2,766	1.1%	3,252	1.3%	2,912	1.1%	3,906	1.3%
기 타	35,956	14.6%	37,808	15.2%	41,625	16.0%	44,923	17.2%	45,683	1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04,709	405,290	406,408	408,214	412,149	2,036,770	0.50%
자 체 수 입	78,389	76,183	77,808	76,563	78,079	387,022	-0.10%
의 존 수 입	259,087	259,858	261,210	262,240	264,060	1,306,455	0.5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233	69,248	67,389	69,410	70,010	343,290	1.00%
② 세 출	404,709	405,290	406,408	408,214	412,149	2,036,770	0.50%
경 상 지 출	104,045	106,327	108,790	111,486	115,180	545,828	2.60%
사 업 수 요	300,664	298,963	297,618	296,728	296,968	1,490,941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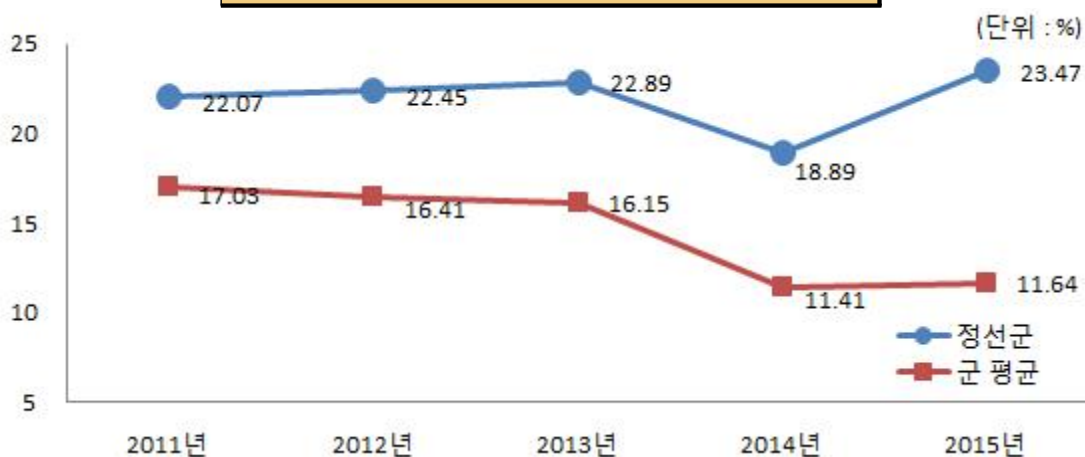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E)
23.47%	290,402	68,158	207,104	0	15,140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2.07%	22.45%	22.89%	18.89%	23.47%
최종예산	22.32%	24.14%	23.78%	15.35%	0.0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 군 평균보다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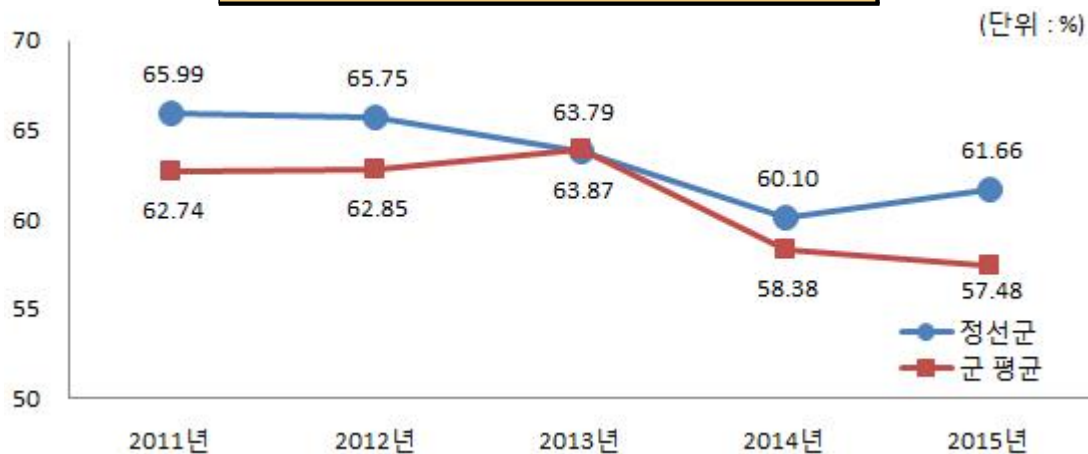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1.66%	290,402	179,058	96,204	0	15,140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5.99%	65.75%	63.79%	60.10%	61.66%
최종예산	65.60%	68.11%	66.84%	59.32%	0.0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은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의존재원이 군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재정자립도에 비해 재정자주도의 차이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5,158	318,686	212	300	88	17,401	318,774	-13,616	3,785
일반회계	275,261	281,818	140	300	160	15,000	281,978	-6,716	8,283
기타 특별회계	20,956	27,559	72	0	-72	1,801	27,487	-6,530	-4,728
공기업 특별회계	7,484	8,884	0	0	0	600	8,884	-1,400	-800
기 금	1,455	424	0	0	0	0	424	1,031	1,031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8,022	-12,766	-8,184	-8,130	-13,616
통합재정수지 2	2,220	-1,988	5,815	2,762	3,785

☞ 2015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1은 1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2는 3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세입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136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순세계잉여금 174억원을 합할시 지출을 충당하고 38억원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통합재정수지1, 2에서 적자와 흑자를 달리하는 이유는 이월사업비의 지출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7	10,004
여성정책추진사업	2	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	9,86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16

▶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정선군은 모델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의 주민참여로 반영된 2015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